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 주간에 적합한 교육·홍보 등의 행사 등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실종아동등의 범위에는 아동뿐만 아니라 치매환자도 포함되는데, 이 중 치매환자의 경우 현재 중앙치매센터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어 실종아동등에 관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만 위탁하여 수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위탁대상 기관에 중앙치매센터를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임

3. 주요내용

가.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 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을 명시 함(안 제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조의2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 주간 행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 주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종아동 예방 및 발견·복귀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 주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종아동 발견 시 신고절차 및 방법, 예방 등에 관하여 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치매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를 말한다.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한다

1. 아동권리보장원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
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2. 중앙치매센터: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
전의 제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 아동주간)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 아동의 날’과 실종아동 주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종아동 예방 및 발견·복귀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 주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종아동 발견 시 신고절차 및 방법, 예방 등에 관하여 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u>
제2조(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 <u>「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u>	제2조(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 <u>①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치매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를 말한다</u>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다. 「치매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
로 지정된 법인인 종합병
원

2.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 또는 치매관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제1호다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금 능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추 능력이 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

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심리학, 아동학, 의학, 간호학 또는 사회복지학 관련 교과목 중 하나의 교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신 설>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한다

1. 아동권리보장원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2. 중앙치매센터: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연 락 처	(044) 202 - 3382